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제출서류

- ※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 서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계비속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 추가제출	
위임장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대리인 신분증/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 주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자료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및 기타사항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확인 및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 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p>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등

▣ 부동산 소유현황 등(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필수	추가 (해당자)			
부동산 소유현황 등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0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② 재산세 과세 내역서(건축물)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발급기관: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
		0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
		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 (부동산자산 제외사항)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 ② 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축산업 허가증 ②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초지) - 발급기관: 토지e음(www.eum.go.kr)>토지이용계획>지번입력>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③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0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자산 제외사항)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사진 ③ 해당 토지이용계획 - 발급기관: 토지e음(www.eum.go.kr)>토지이용계획>지번입력>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 신규 분양권 등(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자산가액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음